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8일, 이인선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9.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9.9.) 상정/제안설명/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인선의원)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은 급변하는 지역산업 현장에서 실무능력과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9).

3. 검토보고

(전문위원 : 임명현)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과정 운영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9)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학위 수여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① 대경과기원에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 등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① ----------전문석사·석사----------.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석사·석사----------.
제12조의9(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12조의9(학위수여) ----------전문석사·석사----------.

2) 검토의견

현재 전문석사과정을 운영중인 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이 있는데, 한국과학기술원은 2023년부터 반도체 공학전문석사과정과 미래도시 공학전문석사과정을 운영 중임.[1)]

<한국과학기술원의 전문석사 학위과정 운영 현황>

연도	학과(부)	전문석사과정	입학	졸업	재학*
2022	미운영				
2023	전기및전자공학부	반도체 공학전문석사과정	6명	-	6명
	건설및환경공학과	미래도시 공학전문석사과정	4명	-	4명
2024	전기및전자공학부	반도체 공학전문석사과정	6명	-	12명
	건설및환경공학과	미래도시 공학전문석사과정	1명	-	5명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도 같은 법 제16조[2)]에 근거하여 전문석사과정 운영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운영한 사례는 없음.[3)]

---

1)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학위과정 등) ① 과학기술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
④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2)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6조(학위과정 등) ① 울산과기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學科)·전공 및 교과(敎科)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도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그 설립취지나 운영형태가 유사한 한국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은 전문석사 학위과정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도 전문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4]

또한, 지역의 실무인력에게 전문석사과정을 이수를 통하여 필요한 전문 공학지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의 취지[5]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문석사 학위과정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지 않은 것임.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현재 전문석사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논의 중에 있음.

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